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고배당 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3. 정정사유:
 - 클래스 추가 (Class A-G, Class C-G)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 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클래스 추가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2. 생략 13.~14. (신설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2. 현행과 같음 13. Class A-G 수익증권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,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14. Class C-G 수익증권 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,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클래스 추가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2. 생략 13.~14. (신설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2. 현행과 같음 13. Class A-G 수익증권

			14. Class C-G 수익증권
제 39 조(보수)	클래스 추가	<p>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2. 생략 13.~14. (신설)</p>	<p>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2. 현행과 같음</p> <p>13. Class A-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90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14. Class C-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7.00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90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2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</p>
제 40 조(판매수수료)	클래스 추가	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.0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2. Class A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</p> <p>3. Class A 및 Class Ae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: 없음</p>	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.0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2. Class A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3. Class A-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7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4. Class A, Class Ae, Class A-G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: 없음</p>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투자신탁[H](주식-재간접형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3. 정정사유:
 - 클래스 추가 (Class A-G, Class C-G)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 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클래스 추가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5. 생략 16.~17. (신설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5. 현행과 같음 16. Class A-G 수익증권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,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17. Class C-G 수익증권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,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클래스 추가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5. 생략 16.~17. (신설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5. 현행과 같음 16. Class A-G 수익증권

			17. Class C-G 수익증권
제 39 조(보수)	클래스 추가	<p>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5. 생략 16.~17. (신설)</p>	<p>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5. 현행과 같음</p> <p>16. Class A-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90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6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17. Class C-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90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6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</p>
제 40 조(판매수수료)	클래스 추가	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.0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2. Class A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</p> <p>3. Class A 및 Class Ae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: 없음</p>	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.0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2. Class A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3. Class A-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7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4. Class A, Class Ae, Class A-G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: 없음</p>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차이나셀렉트 증권투자신탁[UH](주식-재간접형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3. 정정사유:
 - 클래스 추가 (Class A-G, Class C-G)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 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클래스 추가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5. 생략 16.~17. (신설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5. 현행과 같음 16. <b style="color: blue;">Class A-G 수익증권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, 선취 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17. <b style="color: blue;">Class C-G 수익증권: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,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
제 10 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클래스 추가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5. 생략 16.~17. (신설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1.~15. 현행과 같음 16. <b style="color: blue;">Class A-G 수익증권

			17. Class C-G 수익증권
제 39 조(보수)	클래스 추가	<p>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5. 생략 16.~17. (신설)</p>	<p>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5. 현행과 같음</p> <p>16. Class A-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4.90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6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</p> <p>17. Class C-G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1.00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6.90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6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 분의 0.14</p>
제 40 조(판매수수료)	클래스 추가	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.0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2. Class A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</p> <p>3. Class A 및 Class Ae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: 없음</p>	<p>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(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,000 으로 나눈 금액)에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Class A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1.0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2. Class A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5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3. Class A-G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7%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한다.</p> <p>4. Class A, Class Ae, Class A-G 를 제외한 기타 수익증권: 없음</p>